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1. . .

법제처 심사 전

법무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본부 기획조정실장 직속으로 설치 운영 중인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을 벤처형조직의 혁신과제 특성에 맞게 법무부 본부 범죄예방정책국으로 이관하면서 ‘범죄예방데이터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2021. 6. 9.로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 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장 및 소속기관의 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장의 분장사무에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일부 보호관찰소의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6개 광역 단위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부처·기관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생산·관리하는 외국인 신원정보를 국제 기준에 따라 표준화하고, 외국인 정보 관련 빅데이터를 생성·관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밑에 2023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를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3명, 7급 1명)의 직급을 각각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법무부 소속기관의 임상심리사 간 교차인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감호소·보호관찰소 및 소년원에 보호주사·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직급을 신설하여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

고, 소속기관 공업직의 적절한 인사 운영 및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 교정청과 소년원 간 공업직 정원(6급 1명, 7급 1명)을 조정하며, 정년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군 13명(7급 1명, 8급 1명, 9급 11명)을 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기구 신설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7을 삭제하고 제7조의3에 “범죄예방데이터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범죄예방정책국장 밑에 범죄예방데이터과장 1명을 둔다.
- ② 범죄예방데이터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범죄예방데이터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보조한다.

- 1.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통계 등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2.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재범 방지 시스템 구축
- 3.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자장치 개발 및 보급

제7조제9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4의2에 의한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제9조의2에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밑에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장 1명을 둔다.

②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보조한다.

1. 외국인 신원정보 표준화 방안 마련 및 시스템 구축
2. 외국인 신원정보 표준화 플랫폼 운영
3. 외국인 정보 관련 빅데이터 생성 및 관리
4. 그 밖에 외국인 신원정보 표준화 및 빅데이터와 관련된 사항

제23조제6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4의2에 의한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명칭	위치	관할구역
서울보호관찰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동대문구·중랑구 ※ 다만, 전자감독과장의 분장사무 중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4의2에 의한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초동수사 등 긴급성을 요하는 업무 제외)에 대해서는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의정부보호관찰소와 그 지소, 춘천보호관찰소와 그 지소의 관할구역을 관할한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북구·도봉구·강북구·노원구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
의정부보호관찰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가평군, 강원도 철원군
인천보호관찰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옹진군
수원보호관찰소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 ※ 다만, 관찰과장의 분장사무 중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4의2에 의한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초동수사 등 긴급성을 요하는 업무 제외)에 대해서는 수원보호관찰소의 지소, 인천보호관찰소와 그 지소의 관할구역을 관할한다.
춘천보호관찰소	강원도 춘천시	춘천시·홍천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대전보호관찰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금산군 ※ 다만, 전자감독과장의 분장사무 중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4의2에 의한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초동수사 등 긴급성을 요하는 업무 제외)에 대해서는 대전보호관찰소의 지소, 청주보호관찰소와 그 지소의 관할구역을 관할한다.
청주보호관찰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진천군·보은군·괴산군·증평군
대구보호관찰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 영천시·경산시·칠곡군·청도군·군위군 ※ 다만, 전자감독과장의 분장사무 중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4의2에 의한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초동수사 등 긴급성을 요하는 업무 제외)에 대해서는 대구보호관찰소의 지소의 관할구역을 관할한다.
부산보호관찰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연제구·강서구 ※ 다만, 전자감독과장의 분장사무 중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4의2에 의한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초동수사 등 긴급성을 요하는 업무 제외)에 대해서는 부산보호관찰소의 지소, 울산보호관찰소 및 창원보호관찰소와 그 지소의 관할구역을 관할한다.
울산보호관찰소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양산시
창원보호관찰소	경상남도	창원시·김해시·의령군·함안군

광주보호관찰소	창원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나주시·담양군·곡성군·화순군·영광군·장성군 ※ 다만, 전자감독과장의 분장사무 중 사범경찰직무법 제6조제4의2에 의한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초동수사 등 긴급성을 요하는 업무 제외)에 대해서는 광주보호관찰소의 지소, 전주보호관찰소와 그 지소, 제주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을 관할한다.
전주보호관찰소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김제시·완주군·임실군·진안군·무주군
제주보호관찰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
위치추적중앙관계센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대구광역시·경기도·강원도·경상북도
위치추적대전관계센터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광주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파주시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시소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김포시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계양구·강화군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하남시·광주시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	경기도 여주군	이천시·여주군·양평군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광명시·시흥시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안성시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	강원도 강릉시	강릉시·동해시·삼척시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강원도 원주시	원주시·횡성군
춘천보호관찰소 속초지소	강원도 속초시	속초시·양양군·고성군
춘천보호관찰소 영월지소	강원도 영월군	태백시·영월군·정선군·평창군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	충청남도 홍성군	보령시·홍성군·예산군·서천군

대전보호관찰소 공주지소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청양군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시·계룡시·부여군
대전보호관찰소 서산지소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태안군·당진군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아산시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음성군
청주보호관찰소 제천시소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시·단양군
청주보호관찰소 영동지소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영동군·옥천군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서구·달서구·달성군, 성주군·고령군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시·영주시·봉화군·의성군·청송군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대구보호관찰소 포항지소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시·울릉군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구미시
대구보호관찰소 상주지소	경상북도 상주시	상주시·문경시·예천군
대구보호관찰소 영덕지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군·영양군·울진군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금정구·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산청군
창원보호관찰소 통영지소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시·거제시·고성군
창원보호관찰소 밀양지소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창녕군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군·함양군·합천군
광주보호관찰소 목포지소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무안군·신안군·함평군·영암군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시소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여수시·광양시·구례군·고흥군·보성군

광주보호관찰소	전라남도	해남군·완도군·진도군·장흥군·강진군
해 남 지 소	해남군	
전주보호관찰소	전라북도	군산시·익산시
군산지소	군산시	
전주보호관찰소	전라북도	정읍시·부안군·고창군
정읍지소	정읍시	
전주보호관찰소	전라북도	남원시·장수군·순창군
남원지소	남원시	

별표 5의2 중, 서기관 “19”를 “20”으로하고, 출입국관리사무관 “31”을 “32”로 하고, 전산사무관 “7”을 “8”로 하고, 출입국관리주사 “38”을 “36”으로 하고, 전산주사보 “12”를 “11”로 한다.

별표 7 중 공업주사 “10”을 “11”로 하고, 공업서기보 “67”을 “75”로 하며, 기계운영주사보 “4”를 “3”으로 하고, 전기운영서기보 “10”을 “8”로 하며, 기계운영서기보 “26”을 “22”로 하고, 열관리운영서기보 “6”을 “4”로 한다.

별표 8 중, “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4를 “보호주사 · 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4로 하고, 공업서기보 “1”을 “2”로 하며, 열관리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9 중, 보호주사 “108”를 보호주사 “107”, 보호주사 · 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로 하고, 공업주사 “3”을 “2”로 하며, 공업주사보 “3”을 “4”로 한다.

별표 11 중, 보호주사 “317”를 “316”, 보호주사 · 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로 하고, 공업서기보 “1”을 “2로” 하며, 기계운영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12 중, 공업서기 “2”를 “3”으로, 공업서기보 “3”을 “4”로 하고, 기계

운영서기 “1”을 삭제하고, 전기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12의2 중, 공업서기 “2”를 “3”으로, 공업서기보 “3”을 “4”로 하고,
기계운영서기 “1”을 삭제하고, 전기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서기관 1명, 출입국관리사무관 2명, 전산사무관 1명, 전산주사1명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출입국관리사무관 1명, 출입국관리주사 2명, 전산주사 1명, 전산주사보 1명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조의7(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u>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 1명을 둔다. ②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u>범죄예방정책에 관한 통계 등 데이터 수집 및 분석</u> 2. <u>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재범 방지 시스템 구축</u> 3. <u>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자장치 개발 및 보급</u> <신설>	<삭제> <u>제7조의3(범죄예방데이터과)</u>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범죄예방정책국장 밑에 범죄예방데이터과장 1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① ~ ⑧ (생략)

⑨ 전자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신설>

<신설>

명을 둔다.

② 범죄예방데이터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범죄예방데이터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보조한다.

1.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통계 등 데이터 수집 및 분석

2.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재범 방지 시스템 구축

3.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자장치 개발 및 보급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

1. ~ 13. (현행과 같음)

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4의2에 의한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제9조의2(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제23조(보호관찰소) ① ~ ⑤ (생략) ⑥ 전자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신설>	<u>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밑에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장 1명을 둔다.</u> ② <u>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u> ③ <u>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보조한다.</u> 1. <u>외국인 신원정보 표준화 방안 마련 및 시스템 구축</u> 2. <u>외국인 신원정보 표준화 플랫폼 운영</u> 3. <u>외국인 정보 관련 빅데이터 생성 및 관리</u> 4. <u>그 밖에 외국인 신원정보 표준화 및 빅데이터와 관련된 사항</u> 제23조(보호관찰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9. (현행과 같음) 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	---

	<u>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u> <u>관한 법률」 제6조4의2에 의</u> <u>한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u> <u>에 관한 사항</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5의2]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서기관</u>	<u>19</u>	<u>20</u>	+1
·	·	·	
·	·	·	
<u>출입국관리사무관</u>	<u>31</u>	<u>32</u>	+1
<u>전산사무관</u>	<u>7</u>	<u>8</u>	+1
·	·	·	
·	·	·	
<u>출입국관리주사</u>	<u>38</u>	<u>36</u>	△ 2
·	·	·	
·	·	·	
<u>전산주사보</u>	<u>12</u>	<u>11</u>	△ 1
·	·	·	
·	·	·	

[별표 7]

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공업주사			<u>10</u>		<u>11</u>	+1
	.					
	.		.		.	
공업주사보			<u>57</u>		<u>57</u>	±1
	.		.		.	
	.		.		.	
공업서기보			<u>67</u>		<u>75</u>	+8
	.		.		.	
	.		.		.	
기계운영주사보			<u>4</u>		<u>3</u>	△1
	.		.		.	
	.		.		.	
전기운영서기보			<u>10</u>		<u>8</u>	△2
기계운영서기보			<u>26</u>		<u>22</u>	△4
열관리운영서기보			<u>6</u>		<u>4</u>	△2
	.		.		.	
	.		.		.	

※ 별표 7의 공업주사보 정원 변동사항 없음(57명 → 57명)

- 관리운영직군 직렬전환(기계운영 7급 → 공업 7급) : +1명

- 소년원과 지방교정청 간 직급 조정(7급) : △1명

[별표 8]

치료감호소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3항 및 제33조의2 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u>	<u>4</u>	<u><삭 제></u>	△ 4
<u>보호주사·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u>	<u><신 설></u>	<u>4</u>	+4
•	•	•	
•	•	•	
공업서기보	<u>1</u>	<u>2</u>	+1
열관리운영서기보	<u>2</u>	<u>1</u>	△ 1
•	•	•	
•	•	•	

[별표 9]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 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보호주사</u>	<u>108</u>	<u>107</u>	△ 1
<u>보호주사·보안주사또는의료기술주사</u>	<u><신 설></u>	1	+1
<u>공업주사</u>	3	2	△ 1
.	.	.	
.	.	.	
<u>공업주사보</u>	3	4	+1
.	.	.	
.	.	.	

[별표 11]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 제7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보호주사</u>	<u>317</u>	<u>316</u>	△ 1
<u>보호주사·보안주사또는의료기술주사</u>	<u><신 설></u>	1	+1
.	.	.	
공업서기보	1	2	+1
기계운영서기보	3	2	△ 1
.	.	.	
.	.	.	

[별표 12]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 제8항 본문 및 제33조의2

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공업서기</u>	<u>2</u>	<u>3</u>	+1
<u>기계운영서기</u>	<u>1</u>	<u><삭 제></u>	△ 1
·	·	·	
·	·	·	
<u>공업서기보</u>	<u>3</u>	<u>4</u>	+1
<u>전기운영서기보</u>	<u>1</u>	<u><삭 제></u>	△ 1
·	·	·	
·	·	·	

[별표 12의 2]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 제8항 단서 및 제33조의2 제1
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공업서기</u>	<u>2</u>	<u>3</u>	+1
<u>기계운영서기</u>	1	<u><삭 제></u>	△ 1
•	•	•	
•	•	•	
<u>공업서기보</u>	3	4	+1
<u>전기운영서기보</u>	1	<u><삭 제></u>	△ 1
•	•	•	
•	•	•	